

# 2026년도 「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」 사업 시행계획 공고

2026년도 「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」 사업의 신규 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2일  
산업통상부장관

## 1 사업 개요

### 가. 사업 목적

- 미 의약품 관세 정책 대응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여 바이오텍의 제품 개발과 생산지원
- \* 동물세포기반 백신·바이오의약품 GMP제조·장비 인프라를 구축한 공공CDMO와 연계 지원

### 나. 사업 내용

-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의 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바이오텍의 백신·바이오 의약품 제품 개발과 생산지원
- \* CDMO : Contract Development & Manufacturing Organization, 의약품 개발 및 생산대행기관

### 다.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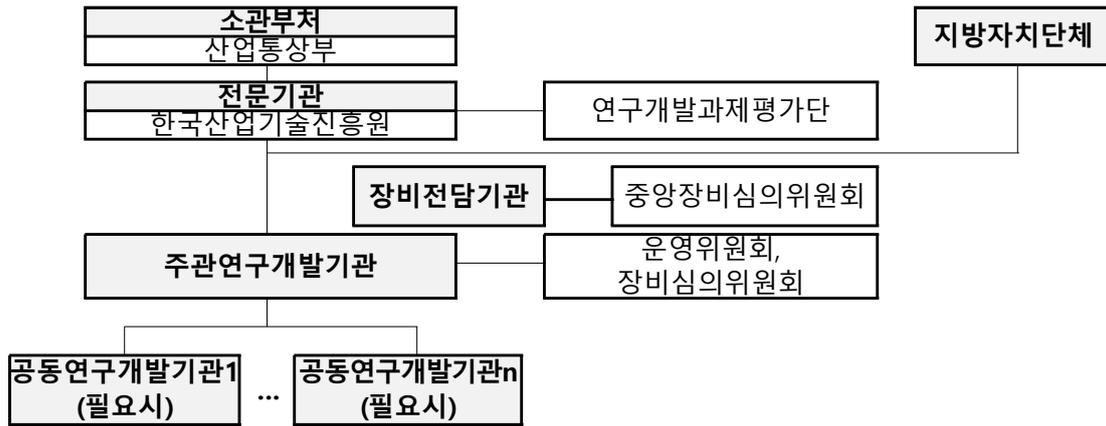
- 지원분야 : (지역제한) 백신 공공 CDMO 관련 사업 (비R&D)
- 지원규모 : 2026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.36억원(총 90.30억원)
- 지원기간 : 2026.04 ~ 2030.12. (5년 이내)
- \* 1차연도 수행기간은 '26.4~'26.12월(9개월),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

#### <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, 안전관리 지정 현황 >

지역	지원대상 과제명	안전관리형 과제 지정
경북	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	미지정

\* 상세 내용은 별도 과제별 제안요청서(RFP) 참조

## 라. 추진 체계



##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

### 가. 신청 자격

구 분	내 용
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*</li> <li>*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</li> </ul>
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수마감일 현재,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기관·개인)는 신청이 불가하며, 각종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</li> <li>*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「6. 법령 및 규정」에 따름</li> </ul>
지자체 출연	○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(현금·현물) 출연을 약속받은 기관

### 나. 지원 기준

구 분	내 용
공모방식	○ 지정공모 (RFP 기반)
지원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(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)</li> <li>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</li> <li>*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</li> </ul>
연구개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(건축비 등 제외)의 70% 이내에서 지원</li> <li>* 기반구축 분야에 한해 아래 사항은 필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자치단체 지원금(지방비)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</li> <li>· 해당 지방자치단체(안동시 포함) 현금·현물 납입확약서 제출 필수(정부지원금 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7:3 비율 이상 매칭)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, 25조, 제30조 및 별표4, 별표5, 별표6</li> <li>*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및 [별표4]</li> </ul> </li> </ul>
통합 연구 시설·장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산정 제외</li> <li>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</li> </ul>
연구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% 이내로 계상</li> <li>* 수정인건비 : 인건비(현물 포함) 및 학생인건비 포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</li> </ul>
간접비	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(현금) 합계의 5% 이내로 계상
기술료	○ 비징수
보안등급	○ 일반과제

### 가. 평가절차 및 일정(안)

주요내용	추진기관	일정
사업 공고	산업통상부	'26. 3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신청기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6. 4
사전검토	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6. 4
선정평가	연구개발과제평가단	'26. 4
연구개발기관 확정	산업통상부	'26. 4
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'26. 4
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연구개발기관	'26. 4~

\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나. 평가기준

- (사전검토)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, 신청자격,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(필요시 면담조사 가능)
  - (선정평가)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,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(Q&A) 진행
- \* 연구개발계획은 연구책임자 발표가 원칙

### 다. 평가방법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
계획의 적정성(20)	목표 명확성	○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
	추진전략 적정성	○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,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
사업추진 체계(40)	추진체계 적절성	○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○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컨소시엄 운영계획
	지자체 의지	○ 지자체 지원금(지방비)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○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, 제도개선 정도 등
	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	○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○ 전담조직 구성,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○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
	연구개발비 적절성	○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
사업내용의 타당성(30)	장비구축 타당성	○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(종류, 예산, 사양 등) ○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
	성공 가능성	○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
기여도(10)	파급효과	○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

※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 세부요소 일부 조정 가능

-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적용 대상 사업임
  - \* RCMS :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<http://www.rcms.go.kr>)
-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관련 규정\*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“중앙조달계약방식”으로 구매(자체조달, 수의계약 불가)
  - \* 관련규정: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,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  - \*\*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
- 과제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포함)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%이상 계상
- 연구인프라 조성비(토지, 건축비 등)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
  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지방비 등)로 현금(구입) 및 현물(임차 또는 기보유)로 산정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·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
  - 확인방법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[ntis.go.kr](http://ntis.go.kr)) 상단 검색창 사용
  - 제기기간 : 2026. 3. 12.(목) ~ 3. 26.(목)
  -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  - 제 기 처 : (06152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공급망진흥실
-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 및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에 따라 처리
- 진도점검·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「6. 법령 및 규정」에 따름

## 가.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
공고기간	■ 2026. 3. 12.(목) ~ 2026. 4. 10.(금) 18:00
접수기간	■ 2026. 3. 19.(목) ~ 2026. 4. 10.(금) 18:00
접 수 처	■ KIAT 과제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에 온라인 등록 ※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
서식교부	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- 홈페이지 → 사업자료 → 사업공고 → 동 사업 공고 선택
접수절차	① (통합회원가입)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(온라인 등록)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공고조회 → 동 사업 공고 선택,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(파일 업로드)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, KIAT 과제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 업로드 -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-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(최종제출)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<b>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</b> 해야 함 ※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,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
유의사항	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) ② 접수 마감일 17:59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<u>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</u> 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-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기 타	■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

## 나.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파일형태	필수여부	대상
1	연구개발계획서	HWP	필수	주관연구개발기관
2	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3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4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5	지자체의 현금·현물 납입확약서	PDF	필수	지자체
6	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·현물 납입확약서	PDF	해당시	해당기관
7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8	전용공간 확보계획서	PDF	필수	해당기관
9	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	PDF	필수	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

## 다. 문의처

- 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문의처
   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박선미 연구원 (02-6009-3913)
  -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
   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-PASS 유지보수팀 (02-6009-4321)
- ※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·답변은 업무시간(09:00~18:00) 내 가능

# 6

## 법령 및 규정

### 가. 근거법령
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
### 나. 관련규정

-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-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
※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